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3-02호

「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8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.
- 나.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의 근거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지원사업 및 지원결정 등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관리·감독 및 지원 제한 등을 규정함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14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why0726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7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회소식 → 공지사항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